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임선태 소유물건
(2025타경7466)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영규

감정평가서번호: 별빛2502-28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转载)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빛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및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	구억오천이십칠만팔천팔백오십원정 (₩950,278,85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영규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출처	경매1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임선태 (2025타경7466)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3.07	2025.03.07	2025.03.10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427.3	토지	427.3	725,000	309,792,500
	건물	657.81	건물	657.81	-	640,486,350
		이	하	여	백	
합계					₩950,278,8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소재 "장곡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대구지방법원(경매11계)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인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 조건

감정평가조건 없습니다.

4. 감정평가 방법

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규칙, 감정평가의 일반 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나.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출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개별건물의 특성상 시장자료 및 수익자료의 수집, 분석, 배분이 곤란하여 다른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 근거법령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6.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3월 07일입니다.

7. 실지조사 ·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5년 03월 07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으며, 실지조사시 목록표시근거 상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8. 그 밖의 사항

본건 건물 중 공부상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 옥탑 계단실 등은 주건물에 부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건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토 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2025년)	비 고
1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252-14	대	427.3	1종 일주	다가구 주택	소로 한면	세장형 평지	309,200	

【건 물】

일련 번호	소재지	구 조	층별	면적(㎡)	용 도	사용승인일자 (증축일자)	비 고
2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252-1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1층	13.23	계단실	2007.05.23. (대수선: 2023.11.8.)	
			2층	214.86	다가구주택		
			3층	214.86	다가구주택		
			4층	214.86	다가구주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토지가액의 산출

1. 토지 감정평가에 참고한 가격자료

가. 인근지역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지 목	면적(m ²)	용도지역	평가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m ²)	비 고
㉠	석적읍 중리 252-**	대	449.1	1종일주	경매	2024.01.27	716,000	
㉡	석적읍 중리 252-**	대	380.4	1종일주	일반거래	2024.03.15	719,000	
㉢	석적읍 중리 249-*	대	427	1종일주	담보	2024.10.07	681,000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나. 대상물건 거래사례

-2023.11.22, 본건 토지 427.3m² + 건물 657.81m²를 ₩920,000,000에 매매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면적(m ²)		거래 시점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m ²)
				토지	건물			
A	석적읍 중리 252-*	1종일주	대	449.4	659.82	2024.01.04	946,000,000 (건물포함)	789,000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개요 : 철근콘크리트조 4층건, 다가구주택 659.82m ² , 사용승인일: 2005.11.21 ※ 건물단가 : 1,400,000원/m ² × 32/50 = 896,000원/m ² ※ 건물가격 : (@896,000×659.82m ²) = 591,198,720 ※ 토지추정단가: {946,000,000(사례거래금액) - 591,198,720(건물가격)} ÷ 449.4m ² (토지면적) ≒ 789,000원/m 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면적(m ²)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토지단가(원/m ²)
				토지	건물			
B	석적읍 중리 261-**	1종일주	대	402.7	657.26	2024. 05.03	880,000,000 (건물포함)	731,000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개요 : 철근콘크리트조 4층건, 다가구주택 657.26m ² , 사용승인일: 2007.03.20 ※ 건물단가 : 1,350,000원/m ² × 33/50 = 891,000원/m ² ※ 건물가격 : (@891,000×657.26m ²) = 585,618,660 ※ 토지추정단가: {880,000,000(사례거래금액) - 585,618,660(건물가격)} ÷ 402.7m ² (토지면적) ≒ 731,000원/m ²							
C	석적읍 중리 262-**	1종일주	대	429.5	659.77	2025. 01.10	830,000,000 (건물포함)	665,000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개요 : 철근콘크리트조 4층건, 다가구주택 659.77m ² , 사용승인일: 2007.06.26 ※ 건물단가 : 1,250,000원/m ² × 33/50 = 825,000원/m ² ※ 건물가격 : (@825,000×659.77m ²) = 544,310,250 ※ 토지추정단가: {830,000,000(사례거래금액) - 544,310,250(건물가격)} ÷ 429.5m ² (토지면적) ≒ 665,000원/m ²							

※ 위 건물추정가격은 공부상 건물구조의 일반적인 재조달원가에 내용연수 및 잔존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라.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용도지역	주위환경	이용상황	도로조건	지가수준(원/m ²)	비고
1종일주	정비된 주택지대	다가구주택	소로한면	700,000 ~ 800,000	위치, 도로조건 등에 따라 가격격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경매 낙찰가율

지역 / 기간	경상북도 칠곡군 2024년 3월 ~ 2025년 2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낙찰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주택	26,862,193,650원	14,443,461,428원	53.8	140	34	24.3
-다가구주택	7,320,880,490원	3,509,076,999원	47.9	45	9	20.0
-단독주택	12,927,772,900원	7,340,381,429원	56.8	63	17	27.0

<최근 1년간 해당지역 평균 낙찰가율 (출처: 인포케어)>

2.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공시지가기준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나. 비교표준지 선정

(1) 선정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표준지 공시지가

【 경상북도 칠곡군 】

【 공시기준일 : 2025. 01. 01 】

구분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가	석적읍 중리 252-14	427.3	대	단독주택	1종일주	소로 한면	세장형 평지	309,200

다.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 소재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지역	용도지역 (산정기간)	지가변동률 (%)	산정내역
경상북도 칠곡군	주거지역 (25.01.01~25.03.07)	0.200% (1.00200)	2025.01.01 ~ 2025.01.31 : 0.094 $(1 + 0.00094) * (1 + 0.00094 * 35/31) \approx 1.00200$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결정 의견	본건이 비교표준지로서 지역요인 동일합니다.

마. 개별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세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개별요인 비교항목

【본건 1/ 표준지 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검토의견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본건이 비교표준지로서 동일합니다.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이 비교표준지로서 동일합니다.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본건이 비교표준지로서 동일합니다.
	인근 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1.00	본건이 비교표준지로서 동일합니다.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맹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동일합니다.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동일합니다.
격 차 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 12. 28), 대법원 판례(2004. 0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2003. 07. 25 선고 2002두5054 외)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 등과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합니다.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가) 산정방식(표준지 기준)

사례기준 표준지 단가(사례 토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의 비교 × 개별요인의 비교)

사점수정한 표준지 단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나) 사례 선정

1) 선정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용도지역 (이용상황)	평가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m ²)	비고
㉠	석적읍 중리 252-**	대	449.1	1종일주 (다가구주택)	경매	2024.01.27	716,000	

2) 선정의견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로서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비교표준지	가
비교사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격차율 산정

【 표준지 기호 가 / 사례 ㉠ 】

비교 표준지 (가)	시점수정한 표준지단가 (a)	공시지가 (2025.01.01) 309,200	시점수정 (2025.01.01 ~ 2025.03.07) 1.00200				산정가격 309,818
	사례기준 표준지단가 (b)	사례단가 716,000	사정 보정 -	시점 수정 1.01236	지역 요인 1.00	개별 요인 1.000	산정가격 724,850
	보정치	보정치 산정(b/a) 724,850 / 309,818 = 2.340				보정치 2.340	

① 시점수정 (2024.01.27 ~ 2025.03.07., 경상북도 칠곡군, 주거지역) : 1.01236

② 지역요인 :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제반 지역요인 대등합니다.(1.00)

③ 개별요인 비교(표준지/사례)

항 목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비교치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내용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제반 개별요인이 대등합니다.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본건은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당해지역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비교 표준지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2.34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대상 토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 고
	기호	단가(원/㎡)							
1	가	309,200	1.00200	1.000	1.000	2.34	724,975	72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대상토지	면적(m ²)	토지단가(원/m ²)	토지가액(원)	비고
1	427.3	725,000	309,792,500	
합 계	427.3	-	309,792,500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은 감정평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사례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나. 거래사례 선정

(1)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m ²)	비고
B	석적읍 중리 261-**	대	402.7	1종일주 (다가구주택)	2024. 05.03	880,000,000 (건물포함)	731,000	

(2) 거래사례 선정의견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로서 용도지역, 이용상황과 주위 환경 등 본건과 비교성이 높은 거래 사례 B)를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대 상 토 지	1
비 교 거래사례	B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치	1.00
결정 의견	상기 선정된 사례는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한 비교사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으며,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연장적용하였습니다.

사례 기호	지역 및 용도지역 (산정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산 정 내 역
B	경상북도 칠곡군 주거지역 (24.05.03~25.03.07)	1.002% (1.01002)	2024.05.01 ~ 2024.05.31 : 0.116 2024.06.01 ~ 2024.06.30 : 0.131 2024.07.01 ~ 2024.07.31 : 0.159 2024.08.01 ~ 2024.08.31 : 0.085 2024.09.01 ~ 2024.09.30 : 0.090 2024.10.01 ~ 2024.10.31 : 0.103 2024.11.01 ~ 2024.11.30 : 0.071 2024.12.01 ~ 2024.12.31 : 0.050 2025.01.01 ~ 2025.01.31 : 0.094 $(1 + 0.00116 * 29/31) * (1 + 0.00131) * (1 + 0.00159) * (1 + 0.00085) * (1 + 0.00090) * (1 + 0.00103) * (1 + 0.00071) * (1 + 0.00050) * (1 + 0.00094) * (1 + 0.00094 * 35/31) \approx 1.01002$

마.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결정 의견	본건은 거래사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개별요인 비교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B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제반 개별요인이 대등합니다.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대상 토지	비교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 고
	기호	단가(원/㎡)							
1	B	731,000	1.00	1.01002	1.000	1.000	738,325	738,000	

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대상토지	면 적(㎡)	토지단가(원/㎡)	시산가액(원)	비고
1	427.3	738,000	315,347,400	
합 계	427.3	-	315,347,4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토지가액의 결정

가.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대상토지	공시지가기준법(원)	거래사례비교법(원)	감정평가액(원)
1	309,792,500	315,347,400	309,792,500
합 계	309,792,500	315,347,400	309,792,500

나. 토지가액의 결정 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유사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N. 건물가액의 산출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및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 대상건물 동별·층별 개요

대상 건물	구 분	구조/ 지붕	용 도	면적(m ²)	사용승인일자
2	1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	계단실	13.23	2007.05.23. (대수선: 2023.11.8.)
	2~4층		다가구주택	644.58	

3. 재조달원가의 결정

가. 표준단가 결정

(1)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2023년 기준】

분류번호	용 도	구 조	급수	표준단가 (원/m ²)	내용연수
01-05-05-09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3	1,713,000	50 (45~55)
01-05-05-09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4	1,487,000	50 (45~55)

(2) 표준단가 결정

상기에서 제시된 표준단가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등을 고려하되, 마감자재의 수준, 기본 설비의 사양 등 건축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표준단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대상건물	구 분	용 도	구 조	표준단가 (원/㎡)	비 고
2	1층	계단실	철근콘크리트조	950,000	
	2~4층	다가구주택		1,400,000	

나. 부대설비 보정단가 결정

본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 부대설비 내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부대설비 보정단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대상건물	설 비 내 용	보정단가(원/㎡)	비 고
2) 2~4층	위생 및 급배수,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표준단가에 포함	

다. 재조달원가의 결정

상기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보정단가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대상건물	구 분	용 도	표준단가 (원/㎡)	보정단가 (원/㎡)	재조달원가 (원/㎡)	비 고
2	1층	계단실	950,000	-	950,000	
	2~4층	다가구주택	1,400,000	-	1,400,000	

4. 감가수정 및 건물단가 결정

가. 감가수정 방법의 결정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본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경제적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을 적용하되, 최근 대수선한점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건물단가 결정

대상 건물	구 분	재조달원가 (원/m ²)	사용 승인일	경과 연수	내용 연수	잔존 연수	적용단가 (원/m ²)	비 고
2	1층	950,000	2007.05.23	17	50	35	665,000	관찰감가
	2~4층	1,400,000	2007.05.23	17	50	35	980,000	관찰감가

5. 건물 감정평가액 결정

대상건물	구 분	면적(m ²)	건물단가(원/m ²)	감정평가액(원)	비 고
2	1층	13.23	665,000	8,797,950	
	2~4층	644.58	980,000	631,688,400	
합계		657.81	-	640,486,3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 감정평가액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

구 분	면적(m ²)	단가(원/m ²)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427.3	725,000	309,792,500	
건 물	657.81	-	640,486,350	
합 계			950,278,850	

2. 결정 의견

상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으로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252-14	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427.3	427.3	725,000	309,792,500	
2	"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2길 46-16	252-14 위지상	단독주택 및 1종근린 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실제: 다가구주택
			계단실	1층	13.23	13.23	665,000	8,797,950	950,000 × 35/50 관찰감가
			다가구주택	2층	189.94	644.58	980,000	631,688,400	1,400,000 × 35/50 관찰감가
			사무소		24.92				
			다가구주택	3층	214.86				
			다가구주택	4층	214.86				
합 계								₩950,278,85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소재 "장곡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정비된 주택지대로서, 다가구주택, 공원, 임야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북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북측 하향 완경사지에 자체지반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다가구 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2) 기 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로서,

- 외벽: 스톤코트 및 화강석 등 마감,
-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 바닥: 장판 및 타일 등 마감,
- 창호: 샷시이중창 입니다.

(2) 이용상태

다가구주택(건물명: 브라운테디)으로서

- 1층: 계단실
- 2층: 다가구주택(5가구: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7호)
- 3층: 다가구주택(5가구: 301호, 302호, 303호, 305호, 307호)
- 4층: 다가구주택(5가구: 501호, 503호, 505호, 506호, 507호)으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나 실제 "다가구주택" 입니다.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중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2) 기 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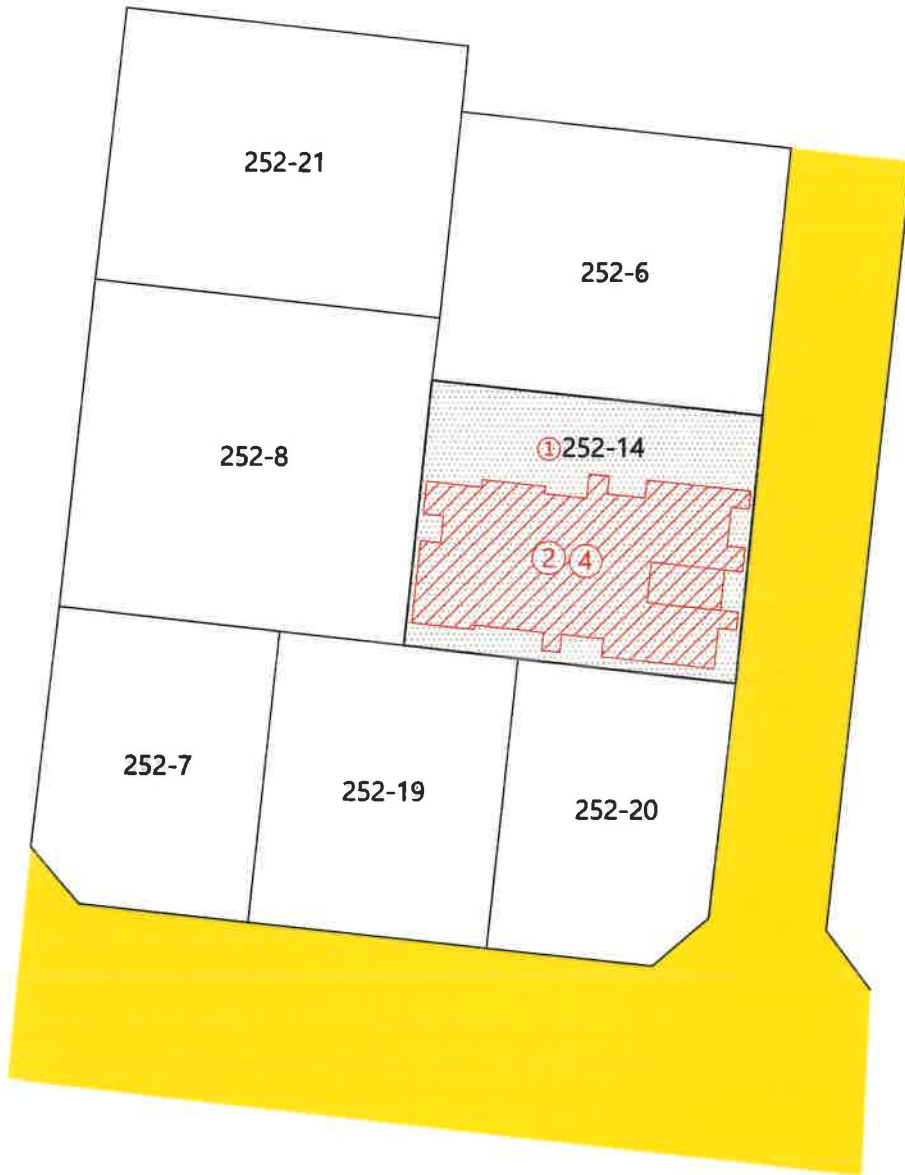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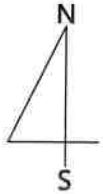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252-14



지적 및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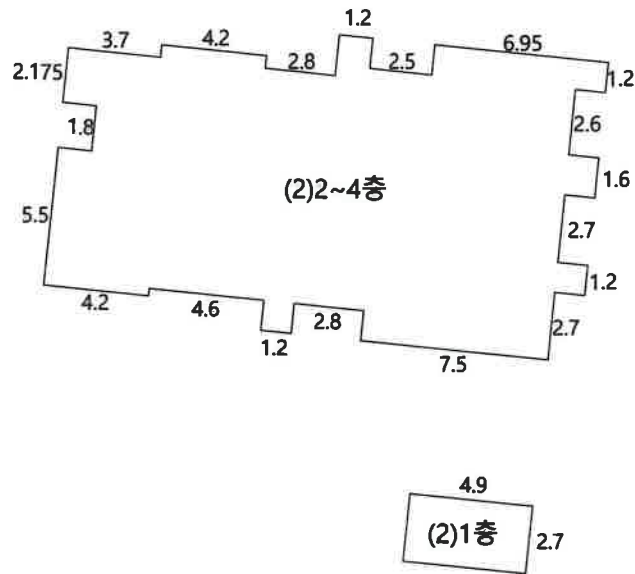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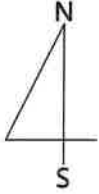
Scale = 1/500



범례		평가대상토지		1층 건물		2층 건물		3층이상 건물
		제시의, 부합물, 종물		감정평가의 건물		도로		주거, 하천

지적 및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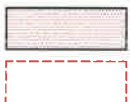
Scale = 1/300



<면적산출근거>

(2)1~4층: 공부상 면적으로 사정

범례



평가대상토지

제시의,부합물,종물



1층 건물

감정평가의 건물



2층 건물

도로



3층이상 건물

구거, 하천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북동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남동측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본건 1층 계단실 전경



본건 2층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3층 전경



본건 4층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주택 내부